

상투메프린시페 헌법재판소

국가개요

1. 국명 : 상투메프린시페 민주공화국(República Democrática de São Tomé e Príncipe)
2. 수도 : 상투메(São Tomé)
3. 인구·면적 : 219,161명(2020), 1,001km²(제주도의 0.5배)
4. 공용어 : 포르투갈어, 프랑스어, 기타 토착어
5. 1인당 GDP : 1,933불(2019)
6. 독립일 : 1975. 7. 12. (포르투갈로부터)
7. 정부형태 및 의회 : 이원집정제, 단원제

1. 명칭 : 상투메프린시페 헌법재판소

- Constitutional Court of São Tomé e Príncipe

2. 연혁

- 1975. 헌법 제정
- 1980. 헌법 개정
- 1987. 헌법 개정
- 1990. 헌법 개정
- 2003. 헌법 개정

3. 구성

- 2005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으나, 관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집되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되고 있음(헌법 제131조)
- 헌법재판소는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(헌법 제132조 제1항)

- 재판관은 대통령에 의하여 지명되어 국회에서 선출됨
- 재판관 중 3인은 현직 대법관, 2인은 법학자 출신이어야 함(헌법 제132조 제2항)
- 재판관의 임기는 5년(헌법 제132조 제3항)
-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들에 의하여 선출됨(헌법 제132조 제4항)
- 재판관은 독립성, 영속성 및 공정성을 보장받고 면책특권이 인정됨(헌법 제132조 제5항)
- 재판관의 면책특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함(헌법 제132조 제6항)

4. 권한

- 사전적 위헌법률심판(헌법 제133조, 제145조)
 - 대통령은 공포되기 전의 법률, 국제조약 및 협정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음
 - 수상 또는 전체 국회의원의 1/5은 공포되기 전의 조직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음
 - 헌법재판소는 제청 후 25일 이내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, 대통령이 제청한 법률, 국제조약 및 협정의 경우 긴급한 때에는 대통령에 의하여 심사기간이 단축됨
- 대통령의 궐위 여부 심사(헌법 제133조 제2항 제a호, 제b호)
- 정당의 합헌성 심사(헌법 제133조 제2항 제e호)
- 국민투표의 합헌성 심사(헌법 제133조 제2항 제f호)
- 추상적 규범통제(헌법 제133조, 제147조)
 - 대통령, 국회의장, 수상, 법무부장관, 국회의원의 1/10은 헌법

재판소에 추상적 규범통제를 요청할 수 있음

- 입법절차상의 하자에 의한 법률의 위헌 선언(헌법 제148조)
- 재판소원(헌법 제149조)
 - 법원이 특정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적용하지 않은 재판 또는 심판 중 위헌 여부가 문제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(헌법 제149조 제1항)
 -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(헌법 제149조 제5항)

5. 심리 및 결정

-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은 원칙적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함(헌법 제150조 제1항)
-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조약이나 협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함(헌법 제146조 제1항)

6. 연락처
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tribunalconstitucional.st/> (현재 정비중)

※ 출처 : 상투메프린시페 헌법

(2020. 11. 작성)